

[별지 제2호 서식]

# 공 고

제7대 양양군탁구협회 회장 선거일정을 다음과 같이  
공고합니다.

다 음

1. 회장 선거일
  - 일 시 : 2025년 1월 11일 13시
  - 장 소 : 양양생활체육센터
2. 회장 후보자 등록 기간
  - 2025년 1월 2일 ~ 2025년 1월 3일 18시까지(2일간)
  - 접수처: 선거운영위원회 사무실(양양생활체육센터사무실내)
  - 선거기탁금: 금5,000,000원  
(신협 131-020-636679 양양군탁구협회)
3. 선거운동 기간
  - 2025년 1월 4일 ~ 2025년 1월 10일 24시까지(7일간)

2024년 12 월 30 일

양양군탁구협회선거운영위원회



[참고 4]

### 후보자 결격사유 해당 현황

| 연번 | 결격사유   | 확인서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해당여부<br>(O, X) |
|----|--|--|----------------|
| 1  |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  | 가족관계<br>증명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
| 2  | 「국가공무원법」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| 등기사항<br>부존재 증명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
| 3  |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 및 시·군·자치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(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.)  |  |                |
| 4  |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 및 시·군·자치단체가 주·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주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「형법」 제314조 및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  |  |                |
| 5  |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<br>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<br>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 | 징계사실 유무<br>확인서,<br>결격사유<br>부존재 확인<br>서약서   |                |
| 6  | 선수를 대상으로 「형법」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|  |                |
| 7  |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 및 시·군·자치단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<br>가.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<br>나. 승부조작, 편파판정, 횡령·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<br>다.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않는 사람  |  |                |
| 8  | 국회의원, 지방자치단체장, 지방의회의원  | 이력서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
| 9  | 사회적 물의,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 행위 등 그 밖의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 사람   | 징계사실 유무<br>확인서,<br>결격사유<br>부존재 확인<br>서약서 등 |                |
| 10 | 체육회 이사회가 회원단체(회원총목단체, 시·군체육회)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당시 해당 회원단체의 임원이었던 자로 지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(지정일로부터 6개월 전 까지 임원이었던 사람 포함)  |  |                |
| 11 | 회원총목단체와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임직원  | 위법,<br>부당거래 금지<br>서약서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

년 월 일

성명

(서명)

양양군탁구협회선거운영위원회 귀중